

대학발전위원회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5.10.28		16		
2	2021.4.26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대학발전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의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, 검토하고, 발전기금 모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학발전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개정 2015.10.28>

제2조 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5.10.28., 2021.4.26>

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간사는 기획홍보팀장으로 한다.<개정 2015.10.28>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임기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④ 위원회에는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어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.

제3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<삭제 2015.10.28>

2. <삭제 2015.10.28>

3. 대학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<개정 2015.10.28>

4. 항공우주상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

제4조 (위원회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.

제5조 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 (회의록)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작성, 비치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7조 (관계부서 등의 협조) 위원회는 관계 부서 및 관련 위원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8조 (비밀유지의 의무) 위원은 위원회 활동 중 취득한 자료 및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9조 (예산)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<개정 2015.10.28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